산림소득사업-공통

가. 사업 대상자

○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
○ 선별·가공·유통·상품화를 하거나, 하고자 하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

<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>

종 류	품 목 명
수실류(14개)	밤, 감(떫은감), 잣, 호두, 대추, 은행, 도토리, 개암, 머루, 다래, 복분자딸기, 산딸기, 석류, 돌배
버섯류(8개)	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
산나물류(12개)	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
약초류(18개)	삼지구엽초, 삽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
약용류(20개)	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, 구기자나무, 두충나무, 헛개나무, 음나무, 참죽나무, 산초나무, 초피나무, 옻나무, 골담초, 산겨릅나무, 산사나무, 느릅나무, 황칠나무, 꾸지뽕나무, 마가목, 화살나무, 목단
수목부산물류(1개)	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
관상산림식물류(6개)	야생화, 자생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
그 밖의 임산물	위 품목 외에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(목재제품을 포함한다)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

※ ‘그 밖의 임산물’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

-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
-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(수실류, 버섯류, 산나물류 등)의 지원기준·지원내용 등을 준용
- 굴취허가,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(유통기반조성사업)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※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(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)

(예 :미선나무,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,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)

나. 지원자격 및 요건

* 확인방법 : 등기부등본, 품목 출하실적, 교육이수증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

구 분		지 원 자 격
임업인 등 * 개인에 한함	임업인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	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포함)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*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
	임업후계자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	독림가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림가
	신지식농업인 (임업분야)	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생산자단체	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< 우선 지원 >

○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(단, 법인은 「기본규정」 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)

○ 농업재해보험(농작물 및 농업인)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(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)

- **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28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**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○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**생산량이 10%이상 증가**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·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

○ 저온, 가뭄·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: 표고재배사 냉·난방 시설, 관수·관정시설, 비가림시설, 냉해예방시설(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), 지주대, 지지대, 받침대 등

○ **산촌거점권역(시·군)***의 임업인,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
* 산촌거점권역 : 괴산군, 울진군, 인제군, 진안군, 평창군 5개 지역

○ **「임업진흥법 시행령」**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(산양삼)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

○ **(의무·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**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,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
- 떫은감 : (사)한국떫은감협회(02-2080-6380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(시·군 담당자)
- 밤 : (사)한국밤재배자협회(041-835-0067)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(시·군 담당자)

○ **'K-FOREST FOOD'**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,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

○ **청년임업인**('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~만 40세 미만)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

○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

○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, 임산물소득조사*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

○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

○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(
* 온·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, 동력수확기, 자동전지가위 등

< 지원 제한 >

○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, 제78조 준용

- **(5년)**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
- **(3년)**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
- **(2년)**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
-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,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  *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
  *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

○ **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**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<u>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</u>

- 떫은감 : (사)한국떫은감협회(02-2080-6380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(시·군 담당자)

< 참고 · 주의사항 >

○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

○ 확인방법 : 등기부등본, 품목 출하실적, 교육이수증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

○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,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○ 사업장(산지, 시설 등)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

○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「산지관리법」 등에 따른 인·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, 인·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)

○ 소모성 비용*은 지원 안됨(안전화, 장갑, 토양개량제, 비료, 세금(공과금 등)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자재)

○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, 임산물생산비조사,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○ 지원요건

① 재배경력 요건

- **(재배경력 1년 미만)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**하며, 산림소득분야 교육*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

* 산림소득분야 협·단체, 임업진흥원, 산림조합, 산림교육원, 대학교 등 산림·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(고등학교·대학교 산림·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·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,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)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

*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되며,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(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,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)

- **(재배경력 1년 이상)**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(교육이수 무관)
- **(재배경력 2년 이상)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·독림가·신지식농업인·생산자단체**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**공모사업** 신청 가능

*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·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
*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㉠ 버섯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

② 영농조합법인 요건

-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9항 별표6 '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'을 적용하며, 자본금이 1억원 이상,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*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'농업인'이 참여(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,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)해야 함

③ 대상토지 요건

-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,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
  [단, 임업인 등에 한해 '등기 비대상'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]
-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·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

*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「4. 청정임산물이용증진」 사업은 미적용)

* 임업인 등의 경우 '등기 대상 시설물'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, '등기 비대상 시설물'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
* 생산자단체는 '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'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; 「기본규정」 별표6 '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' 1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

④ 유사자금* 등 지원제한 (「기본규정」 제35조제8항제3호)

-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(국비+지방비)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(시·군·구에서 실시)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
-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(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)

* 유사자금 :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(토지, 건축물 등)에 투자되는 것
* 「기본규정」 제정·시행일('14.1.1.)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

⑤ 한도, 단가변경 등의 적용

- '25년 선정된 '26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·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, 지방비 확보액,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'25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·적용할 수 있음
- '27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'26년도 지침을 적용함

다. 사업 관련 계약

○ 사업의 계약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7조에 따라 추진

*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
*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
*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(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제7항)
*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

< 계약 방법 >

○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(부가가치세 제외) 또는 용역,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,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,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

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'나라장터')을 이용하여 공고·입찰·계약체결(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

- 계약의 방법(제한경쟁, 협상에 의한 계약 등), 예정가격, 규격서,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 결정 가능

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「지방계약법」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

-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(事後精算)

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
* 조달청장은 「국가계약법」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계약법」을 준수

○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(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)

라. 사후관리

○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

○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**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**를 할 때 「보조금법」제35조의2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60조(중요재산의 등록 등)에 따른 **부기등기**를 하여야 함

* 단,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

○ 중요재산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불가

* 비닐하우스골조 10±3년, 관정·관수·배수시설 5±2년,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

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(소액)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금액				신청기간
			국고	지방비	융자	자부담	
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20	30	30	20	-

○ 사업 목적

- 작업로,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삼물 생산기발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

○ 지원한도 및 단가
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1억원 미만
- 지원단가 :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을받아 낮은 단가 적용

○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

① 인건비 * 단일사업 불가

- (기준단가)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(대한건설협회)

*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
*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
* **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**하나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」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, 산지정리, 제초작업, 묘목식재, 작업로시설, 활엽관목 제거,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.

- (지원한도)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

*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·비속중1인에한함

o **제58조제1항제6호** :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(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·비속중1인에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

나.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

② 종자·묘목대 * 단일사업 불가

- (기준단가) 실단비를 적용하되, 2개 이상 견적서 기준

*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에 따라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'종자업'을등록한자이거나같은법 제38조에 따라 '생산·수입판매신고'를한자에게서구입
* '그밖의임산물'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
*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·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·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, 20만원/kg 이하로 지원
*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,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(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.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)
*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(조경수관측월보)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,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.지원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, **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20% 이하**

*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.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
  (예)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

③ 표고버섯자목구입

- (지원요건)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, 최소 330㎡(100평 이상의표고재배시설에서표고를재배하고있거나 노지에서 1,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

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 * (예) '24년지원받았다면 '26년지원가능'25년에사업신청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**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**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5,000원(W 12cm × L 120cm)

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
- (지원수량) 330㎡당 1,000본

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)을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적정성 확인 후 교부・정산가능

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④ 꽃송이버섯자목구입

- **(지원요건)**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㎡(60평 이상의꽃송이버섯재배시설을소유하고있는자또는1,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

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- **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** * (예) '24년지원받았다면 '26년지원가능'25년신청
- **(지원한도)**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**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**
- **(지원단가)** 본당 금액 1,000원(W 15cm 이상 × L 15cm 이상

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
- **(지원수량) ㎡당 본수 36본**(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)

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**(교부결정 전 구입)**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・정산가능

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⑤ 복령버섯자목구입

- **(지원요건)**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㎡(100평 이상의복령재배지를소유하고있는자

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- **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** * (예) '24년지원받았다면 '26년지원가능'25년신청
- **(지원한도)**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**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**
- **(지원단가)** 본당 금액 2,000원(W 15~20cm × L 30cm)

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
- **(지원수량)** 330㎡당 577본

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**(교부결정 전 구입)**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・정산가능

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⑥ 산림버섯톱밥배지구입

- **(지원요건)**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,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(품종보호출원 완료)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(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
㉠ 바닥면적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

㉡ 6,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

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* 종자업 등록하거나, 생산.판매신고로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

- **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** * (예) '24년지원받았다면 '26년지원가능'25년에사업신청
- **(지원한도)**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**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**
- **(지원단가) 봉당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, 갈변(접종・배양)배지 900원/kg**

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(배지 무게, 형태 차이를 반영)

- **(지원수량)** 바닥면적 330㎡당 * (원통형)10,000봉, (봉형)6,000봉, (사각)8,000봉

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**(교부결정 전 구입)**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・정산가능

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- **(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)** Ⅵ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2, 참고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

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⑦ 송이산가꾸기

- **(지원단가)** '송이산가꾸기사업실시요령' 사업실행기준단가적용

* '송이산가꾸기사업실시요령' 지침참조

⑧ 산림버섯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·난방시설등

- **(지원요건)**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
* 산림버섯 재배·생산관련8시간이상집합교육산림조합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)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(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)
*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지원 가능
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**(지원내용)** 비닐 재배사, 냉난방기,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·보수및증·개축
*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가능/ *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/건 이하
- **(표준모델)** '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' 활용
* 산림청 누리집>정보공개>통합자료실>"표준모델"검색및인건비등현행화활용
- **(국산품종 확인)** Ⅵ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3 확인
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⑨ 톱밥배지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등

*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
- **(지원요건)**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'임업인등또는생산자단체'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 대학 등)을 받은 자
*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
*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'종자업' 등록하고, '생산.수입판매신고' 를한자에한하여지원자가소비는제외
*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*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(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지원), 자동화 기기·시설지원가능
- **(지원내용)** 배지혼합기, 배지처리기(건조장치 포함), 탈병기, 입봉기, 살(멸)균기, 살균대차, 종균기, 위생과 관련된 기기, 배양시설 등
*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
- **(국산품종 확인)** Ⅵ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3 확인
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⑩ 관수·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

- **(지원요건)**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(1일 양수량 30톤 이상, 수중모터 2HP 이상)

* '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' 지침참조
*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,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

- **(지원한도)**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/개소

* 관수·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

⑪ 관수·관정시설기타품목

- **(지원한도)** 스프링클러 6,000천원/0.5ha, 점적 4,500천원/0.5ha,
  관정(6인치, 일반형) 9,500천원/공

*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
*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

⑫ 대추등비가림시설

- **(지원요건)**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작물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
- **(지원내용)** 대추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

*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

⑬ 덩굴류유인시설

- **(지원한도)** ㎡당10천원이내

⑭ 재해예방시설

- **(지원내용)** 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

⑮ 감시시설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등

- **(지원한도)** 보호울타리 40천원/m

*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

⑯ 모노레일

- **(지원요건)**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인 자

* 관광·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

- **(지원한도)**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(견인차, 대차, 주행레일 포함)

⑰ 하우스시설관상산림식물

- **(지원한도)** 하우스 시설 250천원/3.3㎡, 유리온실800천원3.3㎡,
  아크릴 시설 1,000천원/3.3㎡

*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
*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(사무공간, 카페, 휴식공간 등)
* 하우스 시설비이며,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

⑱ 하우스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이외

- **(지원한도)** 하우스 시설 250천원/3.3㎡

*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
*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(사무공간, 카페, 휴식공간 등)
* 하우스 시설비이며,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

⑲ 임산물저장・건조시설

- **(지원요건)**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(연면적) 총합이 100㎡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
*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(사무실, 화장실 등)

- **(지원한도)**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

⑳ 조경수컨테이너생산시설

- **(지원한도)**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, 총사업비의 7% 이내 지원

* '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' 지침 참조

㉑ 작업로 시설(신규)

- **(지원요건)** 노폭은「산지관리법시행령」제8조의제항별표의 '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'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

* 위험구간 콘크리트 포장지원 가능(종단기울기 15%를 초과하는 경우, 구간거리 40m 이내)
* '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' 참조
* 작업로(포장)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・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

- **(지원한도)**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, 포장지원은 1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

* 단,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

㉒ 산림경영관리사

- **(지원요건)** 시설규모(연면적)는 33㎡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(복층 불가)

*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(작업대기·휴식 공간 면적은 25% 이하) 또는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관리사(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)에 한하여 설치
*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「산지관리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
* 동일필지(연접포함 15ha)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
*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(6년) 철저

- **(지원한도)**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

* 단, 포장은 1km 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

- **(지원내용)** '산림경영관리사표준모델지침' 활용

* 2개 유형(컨테이너형, 판넬형), 면적 기준 고려한 6종

【 유의사항】

-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·확인을 통해 실단가 적용 가능
  *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(농협 등 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 제시 시 조정 가능
- 지원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(조달 단가 우선 적용)
- 구조물 등 시설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,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
  * 예) 예버섯재배시설, 톱밥배지생산시설, 관정.관수시설, 휀스 및 cctv, 모노레일, 저장.건조시설 등
- 종자・종묘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

○ 지원 구분 및 한도 :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

*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원 가능(중복지원 불가)
  예) 차량, 저장시설 일괄 지원 불가
*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: 국비 2백만원~20백만원 이하/건(총사업비 10백만원~100백만원 이하)

- 화물차량 : 국비 4백만원/건(총사업비 20백만원) 이하
- 냉동·장탑차 : 국비 5백만원/건(총사업비 25백만원) 이하
- 지게차 : 국비 6백만원/건(총사업비 30백만원) 이하
- 유통 기자재 : 국비 4백만원/건(총사업비 20백만원) 이하
- 저장·건조 시설 : 국비 20백만원/건(총사업비 100백만원) 이하
  * 저장·건조 시설은 100㎡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
- 가공·선별·포장 장비 : 국비 10백만원/건(총사업비 50백만원) 이하
  * 검증된 기계·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(품목별 기계 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)
  * 탈삽제 : 국비 4백만원/㎘ 이내

5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

사업 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 방식	보조 비율(%)				신청 기간
			국	지	융	자	
산양삼 생산자(임업인 등), 생산자 단체	지방자치단체	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	40	60	-	-	수시

○ **사업 목적**

-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

○ **지원 내용**

-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전문 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의 생산적합성 조사(토양, 종자, 종묘)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
  * 시·군·구에서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 부족으로 검사 수수료 지원이 어려운 경우, 다음 연도 예산확보 후 소급 지급

○ **지원 조건**

- 전문 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, 해당 시·군·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·식재한 자
- 해당 시·군·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

< 참고 > 지자체 의무 사항
산양삼 생산신고·변경신고 사항 발생 시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

○ **지원 한도 및 단가**

- 지원 한도 : 생산자(단체) 1인(단체)당 5건 까지
- 지원 단가 : 1건당 38만원(2건 이상 시 실비지원)

* 전문 기관 검사 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,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

○ **증빙 및 지급·정산 방법**

- (증빙 자료) 전문 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 증명서, 세금계산서 등
- (지급·정산) **검사 합격 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**

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단가 적용 기본 원칙: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

*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(농협 등 구매 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